



## 정신장애인의 소득보장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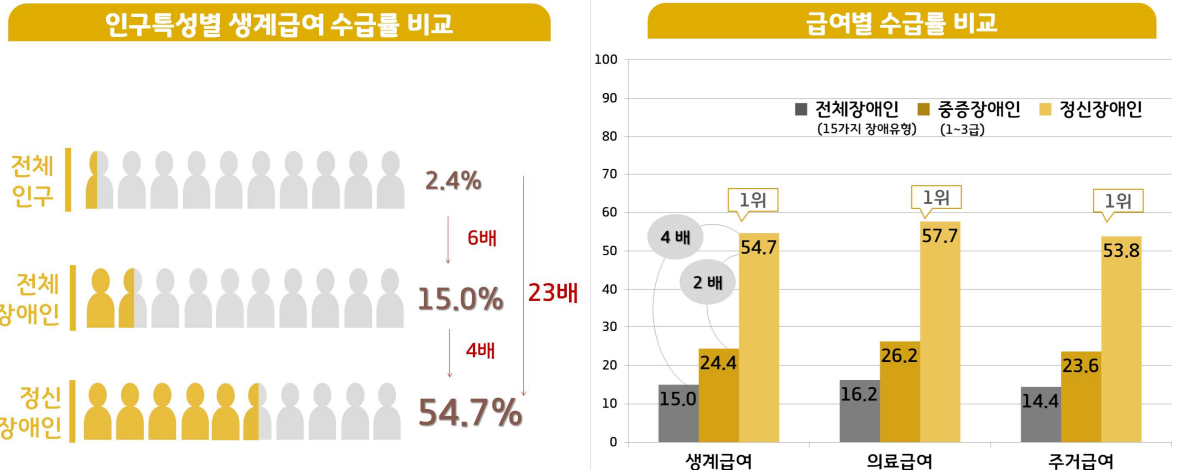
### 정신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전체인구의 약 23배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실업, 빈곤, 노령, 질병 등과 더불어 소득상실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보편적 소득보장제도임. 우리나라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국민연금 장애연금(기여식 사회보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무기여식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최종 사회안전망)의 3단계 소득보전급여와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의 추가비용급여로 이루어짐. 본 동향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을 중심으로 정신장애인의 소득보장 수준을 분석함.

정신장애인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률

#### [ 정신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비교(2017) ]

· 자료원 : 2017 장애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보건복지통계연보(보건복지부) 재구성



- 전체인구 수급률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수 / 주민등록인구 수) x 100
- 생계급여(중위소득 30%)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함.
- 의료급여(중위소득 40%) :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급여이며, 진찰 및 검사, 처치 및 수술 등을 지급함.
- 주거급여(중위소득 45%)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자에게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를 차등 지급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빈곤층이라 할 수 있음. 2015년부터 욕구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7종의 급여\*를 보장함.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국토부 소관), 교육급여(교육부 소관),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2017년 기준 정신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률(생계급여)은 54.7%로 전체장애인 생계급여 수급률(15.0%)대비 약 4배 높고, 전체인구 생계급여 수급률(2.4%)대비 약 2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등록된 정신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라는 의미로 전체인구보다 약 23배 많은 인구가 열악한 생활수준에 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중 가장 대상자가 많고 급여규모가 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수급률을 분석함. 정신장애인 전수가 중증(1-3급)에 해당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정신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세가지 급여(생계,의료,주거) 모두 전체장애인 대비 약 4배, 중증장애인 대비 약 2배로 15개 장애유형 중 정신장애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됨. 수급률 2위인 뇌전증 장애와 비교하여도 격차가 상당함을 알 수 있음. 이는 정신장애가 장애유형 중 가장 열악한 생활여건을 갖고 있음을 의미함.

\* 뇌전증 장애(생계급여 34.5%, 의료급여 37.3%, 주거급여 34.5%)

정신장애인의 빈곤상태는 중증장애인에 비해서도 열악함. 또한 장애인 대분류 기준 정신적장애로 분류되는 장애유형은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인데 이들과 비교해도 정신장애인의 수급률이 압도적으로 높음.

- 생계급여: 전체장애인 15.0%, 중증장애인(1-3급) 24.4%, 경증장애인(4-6급) 9.2%, 정신장애인 54.7%  
지적장애인 30.4%, 자폐성장애 6.5%
- 의료급여: 전체장애인 16.2%, 중증장애인(1-3급) 26.2%, 경증장애인(4-6급) 9.9%, 정신장애인 57.7%  
지적장애인 32.1%, 자폐성장애 6.5%
- 주거급여: 전체장애인 14.4%, 중증장애인(1-3급) 23.6%, 경증장애인(4-6급) 8.7%, 정신장애인 53.8%,  
지적장애인 29.4%, 자폐성장애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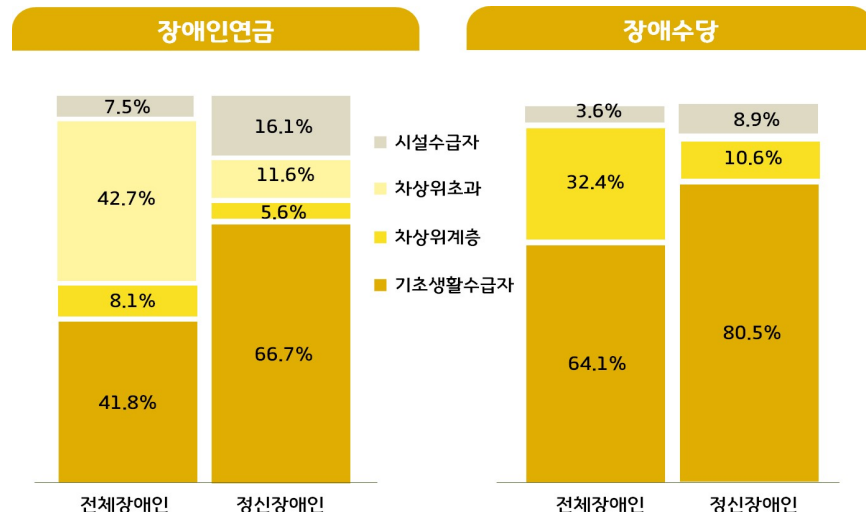
## 기초생활수급자 및 시설수급자 비중, 정신장애인이 유독 높아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수급자  
소득수준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을 근거로 하여 운용되는 무기역직 공공부조제도로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제공하는 급여임. 소득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구성됨.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임.

[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수급자 소득수준 비교(2019년) ]

· 자료원 : 2020 장애통계연보(한국장애인개발원) 재구성



- 장애인연금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상실 또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제공하는 급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2021.01기준
- 장애수당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증장애인에게 생활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수당 (장애수당 월 2만원~4만원) 2021.01기준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1급, 2급, 3급 중복지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의 중증장애인지준과 상이함)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를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전체장애인은 차상위초과 42.7%, 기초생활수급자 41.8%, 차상위계층 8.1%, 시설수급자 7.5%순임. 반면 정신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 66.7%, 시설수급자 16.1%, 차상위초과 11.6%, 차상위계층 5.6%로 순으로 나타남.

- 이를 분석해 보면, 전체장애인 중 소득수준이 차상위초과 대상자가 많은 반면, 정신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약 70%에 육박함. 시설수급자 비중의 경우 정신장애인이 전체장애인보다 약 2배 이상 보장시설 거주자가 많다는 것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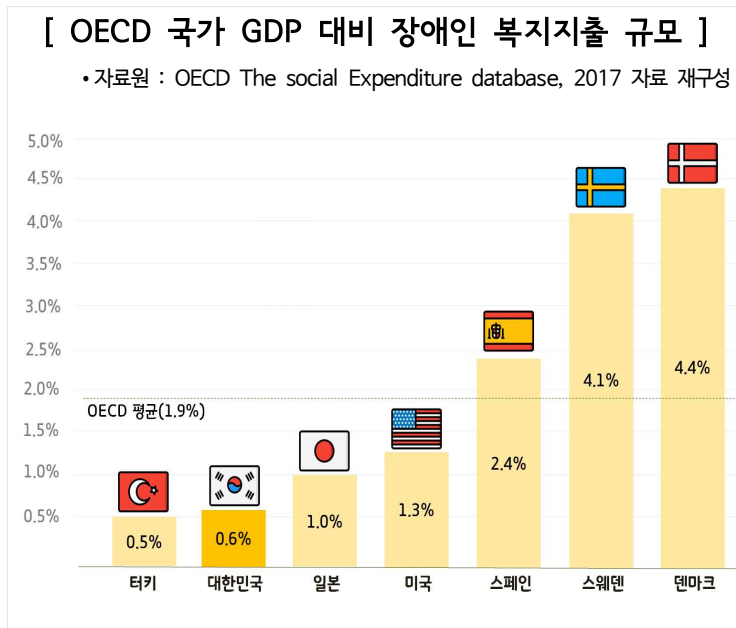
장애수당 수급권자를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전체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 64.1%, 차상위계층 32.4%, 시설수급자 3.6%순임. 정신장애인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80.5%, 차상위계층 10.6%, 시설수급자 8.9%로 순으로 나타남.

- 이를 분석해 보면, 정신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80%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함. 시설수급자 비중의 경우 정신장애인이 전체장애인보다 약 2.5배 보장시설 거주자가 많다는 것을 보여줌.

우리나라의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각각의 제도들은 제한된 수급조건으로 인해 수급자가 적고, 전반적으로 낮은 급여수준을 보임. 2021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월 최대 30만원이며,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54만 8,349원에 그침.

특히, 소득보전의 목적을 갖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의 국외사례를 분석해 보면 일본의 경우 최저임금 대비 50%, 네덜란드의 경우 70%의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애인연금액은 최저임금대비 16.5%(2021년 최저임금은 182만원)로 매우 낮은 수준임. 만약, 기초급여를 최저임금 대비 50% 수준으로 지급할 경우 약 90만원이 예상됨.

OECD 국가  
GDP대비  
장애인  
복지지출



우리나라의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수준이 낮다는 분석 및 연구 결과들이 있으며, 급여수준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재원투자가 중요할 것으로 보임.

정부의 재원투자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GDP대비 장애인복지지출 규모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기준 0.6%에 불과함. 이는 OECD 평균인 1.9%에 비해 약 1/3에 그치는 수준임.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지출은 덴마크(4.4%), 스웨덴(4.1%), 스페인(2.4%)뿐만 아니라 일본(1.0%)의 장애인 복지지출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임.

장애인의 빈곤예방과 생활보장을 위해서는 기본적 생활수준 영위 뿐 아니라, 고용기회 박탈로 인한 소득보전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재원투입이 확대되어야 함.

특히, 장애유형 중 생활수준이 유독 열악한 정신장애인의 경우 최저생활유지를 위한 방안과 불안정한 고용환경 개선 등과 더불어 정신장애인 맞춤형 소득보장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 참고. 장애인 제도별 소득보장 급여수준 ]

· 자료원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1.1.8.), 2020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재구성

구분	수급자격	수급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	소득하위 70%	
「국민연금법」 장애연금 (소득보전급여)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했던 자 중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이 1~4급인 자	1급 :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2급 :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3급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4급 : 기본연금액 225%(일시보상금)				
「장애인연금법」 장애연금 (추가비용급여)	기초급여 (소득보전급여)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월 30만원	월 30만원	월 30만원	월 30만원
	부가급여 (추가비용급여)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월 8만원	월 7만원	월 2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보전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각 급여별 소득인정액이 지급기준액 이하인 가구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름				
「장애인복지법」 장애수당 (추가비용급여)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월 4만원	월 4만원	보장시설 입소자 월 2만원		

### NMHC 동향

- vol.1; 2018. 3 조례로 보는 정신건강
- vol.2; 2018. 5 인구 1인당 정신건강 예산
- vol.3; 2018. 9 세계 정신건강의 날 (WMHDAY)
- vol.4; 2018. 10 한국인의 정신질환 질병부담
- vol.5; 2019. 1 2019년 정신건강복지관련 재원분석 (중앙부처)
- vol.6; 2019. 1 [칼럼] 정신장애는 정말 있는가?
- vol.7; 2019. 2 [칼럼] 정신과 진단을 하면서 견여해지는 이유
- vol.8; 2019. 3 정신건강통합지수로 보는 우리나라 정신건강
- vol.9; 2019. 4 정신장애인의 자살
- vol.10; 2019. 6 한눈에 보는 국외 정신건강 미디어 가이드라인
- vol.11; 2019. 8 정신장애인의 건강
- vol.12; 2019. 9 정신재활시설 현황
- vol.13; 2019. 10 정신건강분야 인력 현황
- vol.14; 2019. 11 정신질환의 사회경제적비용
- vol.15; 2020. 2 2020년 정신건강복지관련 예산(중앙부처)
- vol.16; 2020. 4 중증정신질환자의 규모 및 초발환자 의료이용현황
- vol.17; 2020. 5 정신장애인의 고용현황
- vol.18; 2020. 6 UN에서 말하는 코로나19와 정신건강
- vol.19; 2020. 8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정신질환 진료현황
- vol.20; 2020. 10 시도별 1인당 지역사회 정신건강예산 현황
- vol.21; 2020. 12 정신장애인의 경제상태
- vol.22; 2021. 2 정신장애인의 소득보장 수준

※ 정신건강동향 활용인용 시 반드시 출처표기 바랍니다.